

표준 약관 개정(안) 주요내용

I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
1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

- (개정사유)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, 아동수당법,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수급권의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전용통장 추가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(수급권의 보호)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아동수당법 제18조(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) 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다.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.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(수급권의 보호)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②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

- (개정내용) 각 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를 해당 항목에 신설

2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

- (개정사유) 본인인증수단 추가 및 고객정보유출 피해시 저축은행 면책근거 신설*

* 공정위에서 감독원과 협의 후 해당 개정안 문구를 결제원에 송부

- (개정내용) 지문, 얼굴,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, 고객의 고의·중과실로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저축은행 면책근거 마련

II 시행일 : '18. 8. 9.'

* 다만,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중 아동수당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은 각 법 해당규정의 시행일인 '18.9.1일(아동수당법) 및 '18.9.13일(중소기업협동조합법)부터 시행

(첨부2)

표준 약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

현 행	개 정 안	
제3조 (가입대상) 1. (생략) 2. 「기초노령연금법」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3. ~ 8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 (가입대상) 1. (현행과 같음) 2. 「기초연금법」----- 기초연금수급자 3. ~ 8. (현행과 같음) 9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권자 10. 「아동수당법」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자 11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서 정하는 공제금 수급권자	법령변경에 따른 개정

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

현 행	개 정 안	
제2조 (용어의 정의) ① (생략)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 (용어의 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“바이오정보”란 지문, 얼	바이오

정보와
바이오
인증에
관한 정의

굴,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. 바이오 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자 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.

<신 설>

제5조(홈페이지 이용방법)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제출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.

제6조 (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)

-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과

- 7. “바이오인증”이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된 바이오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의미하며,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(홈페이지 이용방법)-----

---과 휴대폰 본인인증---

제6조 (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)

- ① -----

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

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,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③ (생략)

④ <신 설>

④ (생략)

⑤ (생략)

<신 설>

-- 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 -----

② -----, 바이오 인증과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바이오인증 5회 이상 오류 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⑤

⑥

제8조 (고객의 개인정보보호)

① 저축은행은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(기관)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, 이용 또는 제공(전달)하는 행

항번호 채상

항번호 채상

<p>제8조 (생략)</p> <p>제9조 (생략)</p>	<p>위를 불허합니다.</p> <p>② <u>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(기관)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저축은행은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.</u></p> <p>제9조</p> <p>제10조</p>	<p>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저축은행 면책근거 마련</p> <p>조번호 제상</p> <p>조번호 제상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